과천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시행세칙

제정 2020. 08. 13. 세칙 제15호 개정 2021. 06. 09. 세칙 제21호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지방공기업법」제65조의3에 따라 과천도시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가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 및 운영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외부전문가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 심의회 위원장은 공사 사장(이하 "사장" 이라 한다)이 되고 심의회를 총괄 한다.
 - ③ 심의회 부위원장은 공사 본부장이 되고,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 내부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각각의 심의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여 구성하되, 제안 부서장은 해당 심사안건 심의 시 제척한다.
 - ⑤ 외부위원은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, 도시계획, 금융·회계, 도시재생, 경영·투자,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
 - ⑥ 위촉된 투자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2차례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1.06.09.)
 - ⑦ 심의회 운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(이하 "제안부서장" 이라 한다)이 제안하고 심의회 운영부서장이 주관한다.
 - ⑧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, 심의회 운영부서장으로 한다. 간사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.
- 제3조(심의대상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대상 사업을 심의한다.
 - 1. 「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」제21조 및 정관 제7조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
 - 2. 투자 진행 중인 사업의 위험 관리 및 재정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사업

- 3. 그 밖에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
- ②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과천시 정책사업 수행으로 사업이 사실상 추진 중에 있어 심의가 불필요한 사업
- 2. 사업의 성격상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
- 3.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특수한 사업. 다만, 심의회 생략여부에 대한 사장의 방침 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함

제4조(심의내용) ① 투자사업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분석하여야 한다.

- 1.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
- 2. 공사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
- 3. 상위계획과의 일관성
- 4. 기본구상 수립의 적정성
- 5. 시장성·수요 분석의 적정성
- 6.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
- 7. 재정·경제적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
- 8. 재원조달능력 및 연도별 투자계획 분석의 적정성
- 9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.

- 1.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- 2. 위원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(개정 2021.06.09.)
-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·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 가 있는 사항(개정 2021.06.09.)
- ② 위원은 심의·의결 등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- 2. 그 밖에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
- ③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

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에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(개정 2021.06.09.)

- 제6조(위원의 해촉) 사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제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기피 신청 또는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기타 심의·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제7조(심의절차) ① 제안부서장은 심의대상 사업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는 외부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 후 부의하여야 하며,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사업은 필요에 따라 타당성 조사용역 또는 수요조사를 시행한 후 부의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정책사업(국고지원사업을 포함한다),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, 「지방공기업법」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은 예외로 한다.
 - ③ 제안부서장은 부의안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간사는 부의안 및 첨부서류를 검토·조정 후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전검토)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토 기간을 미리 지정하여 심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소집 및 의결) ① 심의회는 제안부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장은 심의회 소집 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④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한 때에는 제5조의 심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원안의결, 조건부의결, 부결, 보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⑤ 심의회는 출석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,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.
- 제10조(회의록 등) ①간사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② 투자심의 위원은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서명날인을 통해 심의내용에 대한 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06.09.)
- 제11조(심의결과조치) ① 간사는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안부서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 - ② 심의결과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을 통보받은 제안부서장은 이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조건부 의결인 경우 심의에 따른 조치계획서 및 이를 반영한 안건 변경안 작성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 - ③ 제안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사후효과분석) 제안부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수당 및 자문료등)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4조(비밀누설 금지)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(개정 2021.06.09.)
- 제15조(기타사항)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 8. 13. 제정 세칙 제1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

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1. 06. 09. 개정 세칙 제21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과천도시공사 투자심의 부의안 (제7조제1항 관련)

제 회 투자심의위원회								
심의일시		의안번호	제	<u>ই</u>				
제안부서								
안건제목								
1. 의결주문 ○ (안건제목)	을 원안대로 의결 바랍니	다.						
2. 부의근거 ○ (투자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제3조 제00항)								
3. 제안사유								
4. 주요골자								
5. 붙임자료 ○ (사업계획 ○ (추진 중인	서 등) ! 사업의 변경 등에 관한	사항 등)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○ ○ 지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안건 (제7조제1항 관련)

목 차

- I. 사업지구
- Ⅱ. 사업추진 일정계획
- Ⅲ. 지역여건
 - 1. 인구 및 주택현황
 - 2. 지가현황
 - 3. 해당지역 개발계획 현황
 - 4. 해당지구 개발사업관련 각종기관 및 주민요구사항
- Ⅳ. 개발(기본)구상 및 개발여건 VII. 사업성 분석
 - 1. 토지이용계획
 - 2. 토지이용 및 지장물 현황
 - 3. 기반시설 등 설치여건
 - 4. 간선시설 부담현황
 - 5. 절·성토현황
 - 6. 지형 및 지질
 - 7. 문화재 보존여부 검토
 - 8. 기타 개발저해요인 현황
- ※ 사업종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- V. 사업비 분석 및 변동내역
 - 1. 용지비
- 2. 조성비
 - 3. 조성원가산출표
 - 4. 사업비 및 공급부문 변동추이
- Ⅵ. 분양성 및 수지개선 대책
 - 1. 수요여건
 - 2. 공급전망
- 3. 수지개선대책

 - 1. 연차별 투자 및 공급, 대금회수 총괄
 - 2. 연차별 투자계획
 - 3. 연차별 공급계획
 - 4. 연차별 대금회수 계획
 - 5. 공급 및 대금회수 조건
 - 6. 연차별 투자 및 회수금액 현가
- 7. 재무분석

[별지 제3호서식]

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(제10조 관련)

제 회 투자심의위원회							
심의일시			의안번호	5_	제	호	
제안부서				·			
안건제목							
심의결과	○ (원안의결/조건부의결/부결) ○ (조건부의결 시 조건)						
소속	성 명	의경	별내용		서 명		

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(제10조 관련)

		제	회 투기	자심의	위원회			
심의일시		장 소						
부의안건								
참 석 자 명 단								
		소 속	성 명		소속		성 명	
심의위원								
_								
			배 석 지	- 명 딘	-			
소 속		성	명		소 속		성 명	
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								
상기 내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.								
			심의	위원	000	(서명	또는 기명	날인)
			. ,				또는 기명	
							또는 기명	